

1. 개정이유

기존 ‘먼지’에 대한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가 신설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5.3.25) 되었음. 이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 인력을 증원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응축성 먼지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
- 나. 현행 대기오염, 배출량 및 위해성 분야 전문가에 더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 추가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나.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00. ~ 11. 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대기연구부장**”을 “**대기연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해성평가**”를 각각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u>법 제7조제2항</u> 에 따라 매년 기준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u>법 제7조제3항</u> 에 따라----- ----- ----- ----- -----.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u>기후대기연구부장</u> 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u>대기환경연구부장</u> 이----- ----- -----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
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
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